

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발 의 자 : 김규학 의원, 김태원 의원, 강민구 의원, 강성환 의원, 김대현 의원, 김성태 의원, 김원규 의원, 홍인표 의원,
- 제출일자 : 2021년 7월 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5일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해야 할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3조 ~ 제4조)
-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법인 및 단체에 포상(안 제5조)

3. 검토의견

□ 제정취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자생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·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, 전통무예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승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□ 적법성 여부

-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·보호 및 육성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**안 제1조**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·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였고,
- **안 제2조**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「전통무예진흥법」 제2조제1호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, 예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- **안 제3조**에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,
- **안 제4조**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구체화하였고,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음.
- **안 제5조**는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·법인·단체 등에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.

[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]

번호	제목	주요내용
제1조	목적	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
제2조	정의	전통무예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한 뜻을 규정
제3조	책무	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대구시장의 책무를 규정
제4조	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	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수행하는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
제5조	포상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공로가 큰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전통무예진흥법」에 근거하여 지역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이를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전통무예는 과격한 신체활동보다는 수련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, 상호경쟁보다는 예의범절과 인성교육 등 전통문화와 맥을 같이하는 치유적 인격수양 성격의 스포츠로 부각 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무예의 주요 가치인 도전, 존중, 배려, 수양 등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그 근거가 명확하고,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제정·시행*되고 있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* 참고자료 1 [타 시·도 전통무예 관련 조례 제정현황] 참조

- 다만, 전통무예는 별도의 정부 지원정책 없이 자생적으로 유지되어 오면서 비공식적인 생성과 소멸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며,

< 전통무예 실태조사 개요 >

- 기 간 : '18.10.23.~'19.5.28.
- 수행기관 :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
- 조사방법 : 통계조사(조사대상별 표본 선정 및 현장조사 실시)
- 조사대상/응답률 : 무예단체 231개 중 84개 단체 응답(응답률 36%) 도장모집단 16,312개
- 주요내용 : 전통무예 종목단체 기본사항(단체명, 지도자 및 회원 수 등), 도장 현황 등
 - 약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존재
 - 실제 존재 추정되는 단체 231개(실태조사 응답단체 84개, 기타 확인단체 147개)
- ※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기준 : 17개 종목
 - 정회원(13개) : 검도, 국학기공, 궁도, 우수, 태권도, 택견, 합기도, 레슬링, 복싱, 씨름, 유도, 펜싱, 양궁
 - 준회원(3개) : 카라테, 카바디, 킥복싱
 - 인정단체(1개) : 특공무술

- 상위법인 「전통무예진흥법」이 2008년에 제정되었으나, 법정계획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은 2019년 8월에서야 수립되었고,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전통무예 육성 종목 지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열악한 실정임.
- 따라서,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본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실질적 사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대구시 자체 세부 사업계획 마련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음.
- 이상으로 「대구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고자료 1	타 시·도 전통무예 관련 조례 제정현황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연 번	구 분	조 례 명	비 고
1	서 울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1)	
2	부 산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0)	특·광역시 최초 의원발의
3	대 구	-	
4	인 천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1)	
5	광 주	-	
6	대 전	-	
7	울 산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0)	
8	세 종	-	
9	경기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0)	
10	강원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1)	
11	충청북도	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 (2019)	무예 전략산업 육성
12	충청남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0)	
13	전라북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1)	
14	전라남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0)	
15	경상북도	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(2021)	
16	경상남도	-	
17	제주도	-	

※ 기초자치단체 : 충북 아산시 등 14개 단체 조례 제정

참고자료 2 대구시 무예관련 종목단체 및 보조금 지원 현황

○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(무예 관련) : 17개 단체

- 정회원(12개) : 카라테, 검도, 국학기공, 궁도, 우슈, 태권도, 레슬링, 복싱, 씨름, 양궁, 유도, 펜싱
- 준회원(3개) : 택견, 합기도, 종합무술
- 인정단체(2개) : 무에타이, 킥복싱

○ 보조금 지원 현황

(단위: 천원)

연 번	대 회 명	종 목	2019	2020	2021
합 계			144,500	129,800	84,100
1	시장기(배) 대회	가라데	3,700	2,700	3,400
		검 도	6,700	4,900	6,300
		국학기공	5,500	4,100	5,300
		복 싱	3,500	2,500	3,200
		우 슈	7,400	5,700	7,000
		유 도	7,100	5,200	6,700
		씨 림	5,700	4,200	5,400
		태권도	7,600	5,600	7,200
		택 견	1,900	1,400	1,800
		합기도	3,200	2,400	3,000
		종합무술	4,200	3,100	4,000
2	씨름왕 선발대회	씨 림	45,000	45,000	15,750
3	민·관·군 한마음 태권도 대회	태권도	18,000	18,000	6,300
4	태권도시범단 시범공연	태권도	25,000	25,000	8,750

※ 본예산 편성 기준 작성 -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업 미시행(예산 삭감 및 보조금 반납)